

수입·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·질병 신고서(신고확인증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일
신고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	(전화번호)
사육장소		
종류		
수량		
폐사·질병사유		
처리계획		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폐사·질병 상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유역 환경청장
(지방환경청장)

귀하

신고인(대표자) 제출 서류	1. 수의사 진단서(질병으로 사육할 수 없게 된 경우만 해당하며, 개인이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앵무새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 1부 2. 폐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1장	수수료 없음
----------------	---	--------

제 호

수입·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폐사·질병 신고확인증

위와 같이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유역 환경청장(지방환경청장) [인]

귀하

처리절차

